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범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86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27

발 의 자 : 박범계 · 윤준병 · 장종태
이언주 · 백승아 · 권칠승
안호영 · 이광희 · 이개호
전용기 · 김원이 · 박지원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, 직계존속 등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.

그런데 이러한 기본공제 금액이 2009년 이후 150만원으로 17년 간 고정되는 동안 소비자물가지수는 2009년 1월 85.4포인트에서 2025년 1월 기준으로 115.7포인트로 40% 증가하였음. 그럼에도 물가상승에 따른 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. 또한, 최저임금의 상승 등에도 기본공제대상자의 연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인적공제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고, 기

본공제대상자의 연소득 요건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완화함으로써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를 보전하려는 것임(안 제50조).

법률 제 호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50만원”을 “250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100만원”을 각각 “200만원”으로, “500만원”을 각각 “600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본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0조(기본공제)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(자연인만 해당한다)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<u>150만원</u>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.	제50조(기본공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250만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<u>100만원</u> 이하인 사람(총급여액 <u>500만원</u>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)	2.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0만원</u> ----- ----- <u>600만원</u> ----- ----- -----
3. 거주자(그 배우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(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	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다)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<u>100만원</u> 이하인 사람(총급여액 <u>500만</u> <u>원</u>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) 가. ~ 마. (생략) ②·③ (생략)	----- ----- <u>200만원</u> ----- <u>600만</u> <u>원</u> ----- ----- 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
---	---